

「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5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6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 교육법무과-324(2019.1.19.)호 “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”에 따라 「평창군 농업기반시설물 운영관리 조례」의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제명 변경
 - [현행] “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”
 - [변경] “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”
- 용어 변경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 - [현행] 몽리구역, 몽리지역, 몽리면적, 몽리자
 - [변경] 수혜구역, 수혜지역, 수혜면적, 수혜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“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”에 따라 조례의 조문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주민들이 이행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몽리구역, 몽리자 등의 용어를 수혜구역, 수혜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”를 “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몽리구역”을 “수혜구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몽리지역”을 “수혜지역”으로 하고 “몽리면적”을 “수혜면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제5호 중 “몽리구역”을 “수혜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몽리자”를 “수혜자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몽리자”를 “수혜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</p> <p>제3조(관리자의 선정) ① 시설물의 관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또는 농지개량조합(이하“조합”이라 한다) <u>몽리구역</u>인 경우 조합을 관리의 주체로 하여 담당주사 또는 조합장을 관리자로 선정 위촉한다.</p> <p>② 조합 <u>몽리지역</u> 이외의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한 사람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수 또는 <u>몽리면적</u>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몽리구역</u> 및 면적 명세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제4조(관리자의 임무) ②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몽리자</u> 명단, 지번, 지목, 지적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5조(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) 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<u>몽리자</u>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>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</p> <p>제3조(관리자의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혜구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<u>수혜지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혜면적</u>----- -----.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수혜구역</u>-----</p> <p>6. ~ 7. (현황과 같음)</p> <p>제4조(관리자의 임무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수혜자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) ③ -- ----- ----- ----- <u>수혜자</u>----- -----.</p>